

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6. 2. 20.] [조례 제2485호, 2026. 2. 20., 일부개정]

경기도 하남시(복지정책과), 031-790-5306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 6. 18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2. 6. 18.>

1. “희생·공헌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
 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 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 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
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.<개정 2012. 6. 18., 2018. 12. 5., 2022. 11. 30., 2025. 2. 28.>

1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
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
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7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한함)

제4조(시민의 책무) 모든 시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6. 18.>

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 시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2. 6. 18.>

1. 국경일·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
2.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 · 공헌자의 공적 게재
4.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 · 공헌자의 공적 소개
5. 보훈대상,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
6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 · 재정적 지원
7.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희생 · 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
8.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

제6조(단체 예산지원)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회원 권익증대와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
2. 호국 ·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,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
3. 보훈단체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

제7조(복지지원 등)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<개정 2025. 2. 28.>

1. 시가 설치 ·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, 주차료 면제
2. 애국지사의 사망 시 조문 실시
3. 시가 설립 · 관리하는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
4. 시가 설치 ·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·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
5.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문제 우선 배려

제7조의2(한시적 난방비 지원)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23. 2. 23., 2025. 2. 28.>

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2. 6. 18., 2013. 10. 21., 2014. 9. 4., 2017. 1. 11., 2018. 12. 5., 2019. 11. 29., 2022. 11. 30., 2023. 11. 23., 2025. 2. 28., 2026. 2. 20.>

1. 보훈명예수당: 1인당 월 20만원
2. 삭제 <2014. 9. 4.>
3. 사망위로금: 1회 20만원
4.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1인당 월 7만원

② 지급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(사망일)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(사망)한 사람으로 한다.<개정 2012. 6. 18., 2015. 10. 5.>

제9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) ①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,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(주민등록지 동장)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,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2. 6. 18., 2013. 10. 21., 2014. 9. 4., 2018. 12. 5.>

② 삭제<2014. 9. 4>

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,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.<개정 2012. 6. 18., 2013. 10. 21.>

제10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및 결정)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, 적격여부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10.21., 2014. 3. 12.>

②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, 매월 말(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전일)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한다.<개정 2012. 6. 18, 2013. 10. 21., 2014. 3. 12., 2014. 9. 4., 2018. 12. 5.>

③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.<신설 2012. 6. 18.>

제11조(지급중지의 결정) 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.<개정 2013. 10. 21., 2014. 9. 4., 2018. 12. 5.>

1. 사망 또는 다른 시·군·구로 주소를 옮긴 사람

2.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사람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하고, 16일 이후에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.<개정 2013. 10. 21., 2014. 9. 4., 2018. 12. 5., 2025. 2. 28.>

제12조(환수조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<개정 2012. 6. 18.>

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

2.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개정 2012. 6. 18., 2013. 10. 21., 2014. 9. 4., 2018. 12. 5., 2025. 2. 28.>

제13조(민간의 참여조성) 시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6. 18.>

제14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 삭제 <2025. 2. 28.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1083호, 2012. 1. 1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6. 1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 10. 21.>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 3. 1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 9. 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 10. 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 1. 11.>

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1599호, 2018. 12. 5.>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1733호, 2019. 11. 29.>

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2100호, 2022. 11. 30.>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2130호, 2023. 2. 23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7조의2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 <2023. 11. 23.>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2392호, 2025. 2. 2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2419호, 2025. 5. 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2485호, 2026. 2. 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